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훈계요구·통보

제 목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,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

훈계대상자 ① 충청남도 ○○○○○○관 지방○○서기 ○○○  
(전 예산군 ○○○○과)

② 충청남도 아산시 ○○○○과 ○○제 ○급 ○○○

내 용

위 관련자 중 지방○○서기 ○○○은 2013. 1. 16.부터 2014. 10. 20.까지, ○○제 ○급 ○○○은 2017. 1. 2.부터 현재까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와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, 법령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[별표1]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,

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[별표1]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전부 정지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예산군(○○○○과)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(주)의 차고지 임차기간이 2013. 3. 2. 만료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‘차고지 설치 확인서’ 징구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전부정지(30일)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 위 ○○(주)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리는 문서를 통보하지 않는 등,

예산군 등 4개 시·군에서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○○(주) 등 23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(차량 42대)에 대해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‘차고지 설치 확인서’ 징구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전부정지(30일)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.

#### 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 충청남도 예산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충청남도 예산군수, 천안시장, 아산시장, 당진시장은

[통보]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(주) 등 23명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,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전부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